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대중 교통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

본 문서를 읽고 하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기준

서론

승객과 직원의 안전은 뉴욕주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송 사업자는 마스크 또는 페이스 커버의 필수 착용,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 프로토콜 실행, 가능한 경우 서비스 증가, 직원과 승객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 시행(버스 후방 탑승, 열차 내 현금 징수 일시 중단, 가능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가능한 경우 업무 인력의 근무 시간 유연하게 운용 및 교대 시프트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정한 현장 조건은 기관 별, 지역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노선에서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송 사업자가 다각적인 접근법을 추구하고 이행하고, 승객은 마스크 착용, 이동은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 점유율이 낮은 차량 또는 열차칸이용, 개인적 위생 권고사항 준수, 본 지침 및 기타 주정부 지침에 따른 연관 규칙 준수 등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하는 것을 개인적인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대중교통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Transportation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혹은 "대중교통에 대한 코로나 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Public Transportation)"은 코로나 19 확산 기간 중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도입하여 제조 사업체 소유자/운영자, 직원, 하청계약자, 승객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최소 요구 사항일 뿐이며 고용주는 추가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공개 당시의 최선으로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 및 승객(Rider)은 대중교통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또한 이러한 요구 사항 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고 대중교통 활동 및/또는 사업장 안전 계획에 이를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경

2020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34호를 선포해, 사업 운영자/소유자에게 차량에 따라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는 의무 사항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 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재개 2단계가 뉴욕주 몇몇 지역에서 시작되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안전한 재개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을 검토하고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6월 1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의 기준과 더불어 운영자들은 반드시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책임 있는 대중 교통 활동에 대한 기준

다음의 최소한의 주정부 기준 및 적용 가능한 연방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중교통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의 직업안전 위생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최소 기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대중교통 활동에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소유자/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객"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 등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두기

- 물리적 거리두기 의무 사항 및 권장 사항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대중교통 차량, 버스, 지하철, 플랫폼을 비롯해 역과 같은 공용 공간, (2) 직원 공간 및 직원용 차량과 같이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인 사용 공간.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안전 또는 핵심 활동을 위해 좁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영 직원(일반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직원 등)이 서로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시설 또는 인프라 유지 보수 제공, 차량 공급유지 관리 등).
- 책임 당사자는 일반 대중과 접촉하는 직원이 물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소재, 일회용, 기타 직접 만든 페이스 커버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기준 하에서 사용되는 N95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PPE 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행정명령 202.18 호의 의무사항에 따라, 승객은 대중교통 차량 및 공공 장소(계단, 플랫폼, 역, 지하철/기차 차량, 버스 등)를 포함한 모든 이동 구간에서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반드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2 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이러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만 2 세 이상이고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수 있는 승객이 이동 중에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다면, 책임 당사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개인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승객은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및 이동 차량을 이용할 때 이동 경로 전체(계단, 플랫폼, 역, 기차 차량 등)에서 다른 승객 및 직원(교통 플랫폼이나 열차의 덜 붐비는 구역으로 이동)으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직원이 모든 방향(좌우 및 서로 마주할 경우)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작업 공간이나 공간을 공유하지 않도록 작업 공간 및 직원 좌석 공간의 수를 제한 및/또는 활용법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또는 공간 사이의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에서 페이스 커버 대신 플라스틱 차단벽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은 OSHA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좁은 공간(엘리베이터, 제어실, 직용 전용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공간에 있는 모든 원이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를 이용하여 최대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일부 공간 혹은 차량에는 외부 공기가 유입될 공간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밀집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 내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계단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역의 레이아웃을 통해 승객이 다른 승객 및 직원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승객은 대중교통 역에서 가능한 경우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철도 차량, 지하철 차량, 버스 레이아웃을 통해 승객이 다른 승객 및 직원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승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능한 경우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시설 레이아웃을 수정하여 직원이 모든 방향으로 최소 6 피트 떨어져 있도록 하거나, 가능하다면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플렉시 유리 또는 금전 등록기의 파티션 등).
 - 책임 당사자는 승객과 접촉할 때 모든 직원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고밀집 구역 폐쇄, 설비 재배치, 교대로 금전 등록기 사용 등).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좁은 통로, 복도 등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모든 공용 공간(출근/퇴근 공간, 건강 검진 스테이션, 휴게실, 금전 등록기 구역, 라커룸 등)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공간을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프 또는 표지판으로 표시하여 양방향 이동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운송 시설 또는 대중교통 차량 내에서 승객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장벽을 비롯해 바닥 데칼, 컬러 테이프 또는 표지와 같은 시각적 신호를 사용하여 승객들에게 직원과의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장려합니다.
 - 승객의 근접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에 단방향 보행 흐름을 만들고 물리적 장벽을 설치합니다.
 - 승객 대기 구역(줄, 교통수단 탑승 구역 등)을 마련하여 다른 승객과 적절한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좌석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용 수요를 관리하고 운송 시스템에서 승객을 분산합니다.
 - 승객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차량, 역 또는 플랫폼의 점유율 수준, 기차/버스/지하철 도착 시간 등).
 - 운전자 출입구와 가까운 좌석을 폐쇄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가운데, 버스에서 뒷문 출입구/출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히 대규모/교통 노선에서 혼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운행 버스 또는 열차 차량의 수를 늘리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DOH 코로나 19 표지와 일치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시설 전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가 보건부의 표지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근무지 또는 근무 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맞춤형 표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직원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코와 입을 마스크 또는 페이스 커버로 가리기.
 - PPE를 적절하게 보관, 필요할 경우 폐기.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코로나 19 증상 및 노출, 대응 조치 보고.
 - 손 위생 및 세척 및 소독 지침 준수.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 준수.
 - 아프다면 집에 머물기.
- 운송 사업자(Transit Operator)의 사유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 등 외부 당사자는 운영자의 승인에 따라 동일한 코로나 지침 관행을 채택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사무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 활동에 대하여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중 사무실 업무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ffice-Based Work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대면 모임(직원 회의, 휴게실, 재고 실 등)을 제한하고 CDC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영상 회의 또는 화상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각자이 서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직원이 교대로 의자에 앉게 하는 등).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실과 같은 좁은 구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며, 그러한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가능한 한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해 표지과 시스템(공간 사용 시 해당 내용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가능한 한 모든 경우(휴식, 식사, 근무 시프트 시작/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6 피트 공간 등)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무 스케줄을 교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C. 근무지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근무지에서 직원 간 대면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현장 출근 직원을 근무지 필수 인력으로 제한.
 - 직원 및 승객 이동량을 장시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현장 인력 감축.

- 근무 시프트 조정(A/B 팀, 교대 도착/출발 시간).
- 일정 변경 또는 공간 사용 중 표지 등을 이용해 한 구역에서 복수의 근로자 및/또는 팀이 근무하지 않도록 조정.
-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직원의 마스크 또는 페이스 커버 착용 의무화.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할 경우 승객들이 터치리스 결제 옵션을 사용하거나 선불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리워드 카드 및 모바일 장치의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승객 및 대중과 접촉하는 직원에게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주고 받을 때 손을 사용하기 보다는 영수증 트레이 또는 카운터를 이용하고, 다른 승객이 사용하기 전에 펜, 카운터, 단단한 표면 등을 닦도록 요청합니다.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송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하고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접촉(시프트를 마치고 떠나는 직원의 퇴로 및 시프트를 시작하는 직원의 출로를 지정하는 등) 및 이동(직원이 가능한 한 자주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있도록 하는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II. 장소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승객이 탑승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가 코와 입을 덮는 페이스 커버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 호를 운영자가 준수하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2 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 호의 내용을 승객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행정명령 202.18 호의 내용에 따라 2 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수 있는 승객은 이동 중에 그러한 커버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거부되거나 퇴장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근무지 활동에 필요한 PPE 뿐만 아니라, 책임 당사자는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구매, 마련, 또는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러한 커버를 직장에서 무료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페이스 커버 또는 마스크, 기타 필요한 PPE 를 적절하게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페이스 커버에는 천(예: 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페이스 실드는 마스크 또는 기타 페이스 커버와 더불어 제공되거나 착용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 커버는 사용 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및 기타 유형의 PPE 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에 대한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페이스 커버를 직장에 공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장비(수술용 마스크, N95 호흡기 또는 안면 보호막 등)을 착용하는 것을 막거나, 책임 당사자가 업무적 특정로 인해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호 PPE 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모든 적용 가능한 OSHA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도구, 기기, 자재 및 차량과 같은 장비의 공유뿐만 아니라 컨트롤 패널 및 키패드 등 공유 표면을 만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이 공유 물건 및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무역 관련 또는 의료)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직원이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쓰레기 봉투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처리 및 폐기할 때 장갑이나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이후 손을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도록 PPE 를 적절하게 착용, 탈착, 세척, (해당되는 경우)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CDC 및 DOH 가 권고하는 청소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일자,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경우 터미널 및 역의 현장에서 다음의 손 위생 스테이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소독제: 알코올 60 퍼센트 이상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역의 승객에게 최소 60 퍼센트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의 손소독제 제공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손이 눈에 띄게 더러워졌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손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더러워진 물품을 폐기하도록 청소 프로토콜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물품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적합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공유 물품(지불 장비 등), 구역 및/또는 대중 접근이 가능한 표면(문, 난간 등)의 취급과 관련된 대중교통 활동에 대하여,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구역과 물품을 최소한 하루에 두 번 청소 및 소독하거나, 만약 대안적 방법이 동일하거나 더욱 큰 공중 보건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대안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시설 내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각 시프트 교대 후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운행 중인 열차, 버스, 지하철 차량은 매일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세정 및 소독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빈도로 청소 및 소독할 수 있습니다.
- 텀스타일, 티켓 판매기, 난간과 같이 역이나 접촉이 잦은 표면은 하루에 두 번, 또는 더 효과적인 세척 및 소독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보다 낮은 빈도로 청소 및 소독합니다.
- 접촉이 잦은 구역(티켓 판매기, 문 손잡이 등)을 자주 청소 및 소독하거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청소 및 소독 제품을 사용할 경우 낮은 빈도로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할 직원 고용을 고려합니다.
- 보다 효과적인 세정 및 소독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매일 또는 낮은 빈도로 특수 액세스 차량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표지, 사용 중 표시 마커,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화장실 사용 인원을 감축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인증 소독제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장비 및 도구를 청소 및 소독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최소한 근무자 교체 또는 새로운 도구 사용 시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기계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중간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수송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자동 판매기, 손잡이, 대중교통 차량 좌석 등)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선된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운송 시스템에서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시스템 기능 검사 빈도를 늘려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역 및 철도 차량의 환기 빈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의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용한 구역을 폐쇄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만약 피해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운영을 종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 운영 상 필수적인 제어 타워/센터의 경우, 해당 구역을 완전히 폐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은 해당 지역을 청소 및 소독할 때까지 페이스 커버와 장갑을 착용하면서 중요한 운영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구역의 공기 순환 활성화.

- 청소 또는 소독 전 24 시간 정도 대기. 24 시간 대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대기.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 19 의심자 및 확진자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 및 소독.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 및 소독한 후, 다시 사용하여 이용 가능.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와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근무지로 복귀 가능.
 - "근접 또는 밀접" 접촉에 대한 정보는 DOH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공공 또는 민간 근로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를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 후 7일 이상이 경과했다면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음식과 음료의 공유(뷔페 스타일 식사 등)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교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최대한 터치리스 방식으로 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동량을 터치리스 도어로 관리 또는 가능한 경우 설치).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활동 재개를 권장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처음 재개할 때 근무 직원 수, 근무 시간 및 수용 승객 수를 제한하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D. 커뮤니케이션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승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용 가능한 지침 표지 등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포함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텍스트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도착 시간이나 밀집도 등 교통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호하는 통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III. 절차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일 건강 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별 조치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승객에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선별 조치는 직원이 현장에 보고하기 전에 가능한 한 원격으로(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 등)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별 조치는 직원들이 선별 결과가 나오기 전 서로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체온을 측정할 때 모든 직원이 페이스 커버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선별은 최소한 고객을 제외한 모든 직원 및 하청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직원 또는 직원 또는 하청업자가 다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 (a)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코로나 19 유증상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 여부.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대한 양성 반응 여부. 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증상 경험 여부.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증상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CDC 의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의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등 앞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변경되는 즉시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운영 상 가능한 경우 직원에 대한 필수 체온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과 더불어, 매일 실시되는 체온 검사는 미국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데이터(체온 데이터 등)의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검사를 비롯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현장에 입장하는 직원 또는 하청업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인원은 최소한 페이스 마스크 또는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한 PPE 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비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페이스 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근무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진단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지침을 받고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퇴장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모든 확진 사례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 19 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직원이 코로나 19 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이러한 선별 프로세스에서 수집한 모든 직원 및 하청업자의 응답을 매일 검토하고 해당 검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또한 반드시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중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직원의 보고를 받을 당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이 사람이 선별 검사에서 양성 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록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개인의 체온 또는 증상을 기록하여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인 준수를 포함한 책임을 담당하며 안전 관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직업 보건 담당자를 안전 관리자로 임명하는 등). 안전 모니터는 복수의 장소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PPE 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을 제외하고 직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하청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모든 접촉자를 확인,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직원 코로나 19 확진 결과를 통보하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직원 또는 하청업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작업장의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고, 해당 직원이 코로나 19 증상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한 시점과 확진 시점 중 더욱 이른 시점의 48 시간 전부터 시설에 입장했다고 기록된 모든 직원 및 하청업자의 정보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방 및 주법,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역 보건부는 자택 분리 및 격리를 포함하여 감염자 또는 노출자에 대한 관리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근접 또는 밀접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추적 또는 기타 매커니즘으로 통보받은 직원은 자신의 고용주에게 통보 시점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완성한 안전 계획의 개요를 직원을 위해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비즈니스 소유주 및 운영자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다음의 링크에서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